

업무 방침: 친밀한 파트너 폭력		
업무 방침 코드: IPV 1	발효일: 2025 년 4 월 8 일	교차 참조: ALT 1 BAI 1 CHA 1 REC 1 RES 1 VIC 1 VUL 1 YOU 1.4

원칙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향적이고 조직적이며 단호한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다수의 다른 범죄와 다르다.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
-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재정적 영향이 대개 오래 지속되고 막대하다.
-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며, 외부 개입(예: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이 있으면 피해자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피해자는 대개 가해자와 재정적,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든 피해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폭력의 정도가 심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1/5 은 친밀한 파트너 살해이다.

본 업무 방침의 적용

본 업무 방침의 목적상

“친밀한 파트너”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에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든 동거하는 사이든 피의자/피고인과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한 적이 있던 모든 사람이다.

다음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해당한다.

-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행을 수반하는 범죄 또는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행 위협
-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행 이외의 범죄(해당 범행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공포나 정신적 충격, 고통, 손실을 초래했거나 실제로 초래하려고 저질러졌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의 범죄성 괴롭힘, 위협,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 공개, 해악 행위 등)
- 친밀한 파트너가 비록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행의 대상인 경우의 범죄. 예를 들어, 피의자가 친밀한 파트너의 자녀나 새 파트너에게 가하는 폭행과 같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위와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예방적 자진 출두 서약(preventative recognizance) 신청을 정당하게 하는 정황
- 위 정황과 관련한 아래의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범죄
 - “K” 파일을 근거로 내린 보석 명령이나 보호 관찰 명령 또는 조건부 선고 명령
 - 구 **가족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에 따라 내린 접근 금지 명령
 -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내린 보호 명령
 - **형법**에 따라 행한 예방적 자진 출두 서약

BC 소추 서비스부(BCPS)는 행정 및 기록 유지 목적상 기소 승인을 받은 모든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을 법원과 검사 파일의 등록 번호에 “K”를 표시하여 “K” 파일로 구분하고 지정한다.

혐의 평가

[검사법\(Crown Counsel Act\)](#)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RCC)가 경찰로부터 접수되면 검사는 ‘[혐의 평가 지침\(Charge Assessment Guidelines\)\(CHA 1\)](#)’ 업무 방침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기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에서 증거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것이다.

검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를 신속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법원 명령 위반은 미래의 폭력과 직결된다고 확인된 위험 요인이므로, 검사는 해당하는 경우 보석 명령과 조건부 선고 명령 그리고 보호 관찰 명령 위반 혐의의 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상해나 위협 또는 협박과 관련한 위반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상당한 가능성의 증거 기준이 충족된다면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강하여 기소에 유리하다. 피의자가 법원 명령을 초래하는 실제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경찰이 "최고 위협"으로 확인한 상황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원 명령 위반은 기소되어야 한다.

현행 가족법(FLA)이나 아동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법(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에 따라 내려진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구 가족 관계법(FRA)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는 명령 미준수 상황이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 위반 기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FLA 에 따른 보호 명령은 형법 제 127 조의 법원 명령 미준수 혐의를 부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FRA 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은 그 구법과 범죄법(Offence Act)의 조항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송 중지가 적절해지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예방적 자진 출두 서약(자진 출두 서약과 근신 약정서(Peace Bond))(REC 1)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숙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BC 교정국이 시행하는 “존중하는 관계 프로그램”(Respectful Relationships Program)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자진 출두 서약의 조건으로 적절할지 숙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소한 1 년의 지역 사회 감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록 A).

상호 혐의는 여간해서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자진 출두 서약도 적절한 경우가 드물다. 상호 폭력을 주장하는 경우의 상황에서 검사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 또는 합의에 의한 행위를 구별하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기소 대안

적절한 상황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에서 기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기소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기소 대안- 성인(Alternatives to Prosecutions - Adults)(ALT 1), 소년 사법- 재판 외 조치(Youth Criminal Justice Act - Extrajudicial Measures)(YOU 1.4)).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에서, 대안 조치는 피해자의 우려 사항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고려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에만 추구하여야 한다.

- 상당한 신체 상해가 없다.
-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전과가 없다.
- 검사가 적절한 위험 요인과 BC 교정국이 제공한 위험 평가 정보를 고려할 때, 차후 친밀한 파트너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없다.
- 대안 조치 사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범을 대상으로 하는 BC 교정국의 “*존중하는 관계 프로그램*”은 대안 조치를 의뢰한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록 A).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대안 조치 의뢰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검사는 의뢰 전에 혐의를 승인하고 석방 조건을 준비하여야 한다.

보석 고려 사항

석방 또는 구금의 적절한 조건 모색

검사는 피해자나 그 외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구금 명령이나 석방 조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대중의 안전,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보석 - 성인(Bail - Adults)(BAI 1)*). 검사는 위험 요인,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증가와 연관된 요인에 관한 모든 가용 정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보석 적부심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경찰에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계속 구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정 범죄의 경우, *형법* 제 515 조 (4.1)항은 법원이 석방 명령에서 피고인의 총기 및 기타 무기 소지를 금지하게 하고 있다. 단, 그러한 조건이 피고인의 안전 또는 피해자나 그 외 사람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검사는 총기, 칼, 기타 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하며, 대중의 안전, 특히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검사는 전에 IPV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보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할 때, *형법* 제 515 조 (6)(b.1)항의 역입증 책임 규정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시도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제 515 조 (6)(b.2)항의 역입증 책임 규정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의 정황상 피고인에게 영향을 주는 법원 명령이 수반된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 기관이 RCC 에 그러한 명령을 포함시켰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능한 관련 명령으로는 구 *FRA*, *FLA*, *아동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법*, *이혼법(Divorce Act)* 등에 따른 명령이 있다. 검사는 각개 명령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명령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해당 법원에 제공하여 보석 조건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상당한 가능성 - 의무 견해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형법 제515조 (12)항**이나 **제 516조 (2)항**에 따라 “접촉 금지” 명령과 함께 구금 명령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경우에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때, 검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그 외 일반 대중을 보호할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법원에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행정 검사(Administrative Crown Counsel)와 협의하여 보석 재심리를 즉각 고려하여야 한다.

보석 조건 검토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경우, 검사는 석방 서류를 검토하여 피해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할 적절하고 강제력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피고인이 서약을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 검사는 제 502조 (2)항의 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해당 서약을 제 515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적절한 조건이 포함된 사법 석방 명령으로 대체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제 512조에 따른 영장 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1차 출두일 전에 경찰이 명한 조건의 검토를 요청하면, 검사는 경찰로부터 받은 RCC를 검토하여야 하며, 견해를 정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접촉을 금지하는 보석 조건을 해제하여 달라고 하면,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력에 관한 추가 정보 및 피해자나 보석 감독관 또는 경찰과 같은 가용 출처로부터 피고인의 배경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접촉 금지”나 기타 조건의 변경을 포함하여 보석 재심리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상황과 관련한 변화는 물론 요청되는 변경의 성격, 권력 관계의 역학,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그 외 일반 대중의 필요와 안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전력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보석 조건 검토에만 동의하여야 한다.

보석에 관한 의견 차이 - 경찰과 협의(“최고 위험” 사건 포함)

경찰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이 “최고 위험”일 수 있다고 우려될 때 피고인의 위험 평가를 개시하기로 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최고 위험”으로 확인했는데 검사가 구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경찰이 권고한 보석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보석 적부심 전에 경찰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찰이 추가 관련 증거나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협의 후 경찰과 검사가 여전히 구금 여부나 경찰이 권고한 보석 조건 필요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보석 적부심 전에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최고 위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가 구금 여부나 경찰이 권고한 보석 조건 필요 여부에 관하여 경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경찰에게 구금 신청이나 특정 조건의 부과를 뒷받침하는 추가 관련 증거나 정보가 있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보석 적부심을 수행하기 전에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 경찰과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사건에서 검사는 의견 불일치의 근거와 검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기술하는 메모를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보석 위반

"최고 위험" 사건에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가 있어 누구든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보석 취소를 신청하고 구금 명령을 받아내야 한다. 그 외 모든 사건에서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가 있어 누구든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법 제 524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보석 취소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 보호 - 아동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법

아동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법 제 14 조에 따라, 동법 제 13 조에 정의된 대로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건을 국장이나 국장이 지정한 아동 보호관에게 반드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사는 경찰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RCC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 동법의 정의대로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정보를 추가로 받는 경우 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최고 위험" 사건 포함)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나 지정된 BC 소추 서비스부 직원은 BC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연방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범죄 피해자(Victims of Crime)(VIC 1)**에 관한 업무 방침 등에 따라, 기소 혐의나 석방 조건, 사건의 기타 진전 사항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때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이 "최고 위험"으로 확인한 사건에서, 검사 또는 지정된 BC 소추 서비스부 직원은 석방, 석방 조건, 법원 처분 등이 피해자와 경찰에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지역에서 합의된 관행상 알리는 일이 검사 소관이 아니면, 다른 사법/아동 복지 부서(예: BC 교정국, 아동 가족 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에 가능한 한 조속히 알리는 일은 경찰 소관이다.

주저하는 증인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 기소에서 피해자나 기타 증인이 주저하는 일이 흔히 있다. 피고인과 그 외 사람들이 법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폭력 자체를 대개 부인한다. 검사는 증언을 주저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나 증인이 위협이나 간섭을 받아왔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경찰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피해자 서비스나 문화적 또는 원주민 피해자 지원 단체는 법원 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증언 소환장이 직접 전달되게 하여야 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중요 증인 출두 영장을 받아내야 한다. 중요 증인 출두 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사는 행정 검사와 협의하여 피해자가 증언할 가능성, 피해자의 법정 출두 불응에 대한 설명, 친밀한 파트너 폭력 혐의의 심각성, 아동과 그 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를 형사 사법 제도에서 더 멀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부양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또한 여성 피해자의 취약성이 증가한 현실도 고려하여야 하며, 원주민 여성 피해자의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증언할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증언 편의 제공 및 공표 금지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 제 13 조와 제 19 조*에는 모든 피해자가 소송 절차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나올 때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증언상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검사는 제 486~486.5 조 및 제 486.7 조에 따라 증언 편의나 공표 금지가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상황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 일반인 퇴장 또는 비공개석에 증인 착석(제 486 조 (1)항)
- 동반자 또는 법정 동반견 이용(제 486.1 조와 제 486.7 조)
- 증인이 다른 방에서, 휘장 뒤에서 또는 기타 장치로 증언(제 486.2 조)
- 지정 변호사가 반대 신문(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 486.3 조)
- 피해자의 신원 공표 금지(제 486.4 조와 제 486.5 조)

드물지만 적합한 경우, 검사는 형법 제 486.31 조에 따라 소송 절차 과정에서 증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나 형법 제 486.7 조에 따라 증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검사는 그러한 신청을 하기 전에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나 증인과 상의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공표 금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판단하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가 공표 금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명령하면 검사는 관련 피해자나 증인에게 명령의 존재를 알려야 하며, 피해자나 증인이 공표 금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에게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 486.5 조 (8.2)항).

심리 준비

심각한 신체 상해나 사망의 잠재성이 상당하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취약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취약한 피해자와 증인(Vulnerable Victims and Witnesses)(VUL 1)), 파일을 빠른 날짜에 공판 담당 검사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배정된 검사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 피해자, 경찰, 피해자 서비스, 아동 가족 개발부(MCFD), 원주민 단체 등과 연락 및 협조 강화
- 빠른 공판일 모색
- 피해자에게 형법 제 486~486.31 조 및 제 486.7 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증언 편의 또는 공표 금지 조기 확인 및 통지

합의 논의

검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에서 합의 논의에 들어가거나 소송 중지를 지시하기 전에 합의 논의(Resolution Discussions)에 관한 업무 방침(RES 1)을 숙고하여야 한다.

양형

피해자에게는 범죄 피해자법 제 4 조 및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 제 15 조와 제 19 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검사는 IPV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정황과 유죄 판결 전력을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범행 시 가해자의 친밀한 파트너 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한 증거는 양형이 늘어야 하는 가중 정황이다. 형법 제 718.2 조 (a)(ii)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선고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IPV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견해를 정리할 때 선고 판사가 일부 정식 기소 범죄에 대하여 규정된 최대치 이상의 형기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제 718.3 조 (8)항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 718.201 조를

유념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여성 피해자의 취약성이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게 하고 있으며, 원주민 여성 피해자의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지역 사회 감독이 적합한 경우, 검사는 범죄인을 BC 교정국에서 제공하는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부록 A)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선고 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할 조건을 모색하여야 한다. “접촉 금지” 및 보고 요건과 더불어 상담이나 특정 프로그램 출석, 참여 및 성공적 이수가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제 743.21 조에 따라, 범죄인에 대하여 선고 구류 기간 중 피해자나 증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 소통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 487.051 조에 따라 DNA 명령 청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형법 제 109 조나 제 110 조에 따라 무기 소지를 의무적으로 금지할지 재량적으로 금지할지 숙고하여야 하며,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특별히 다루는 제 109 조 (1)(a.1)항이나 제 110 조 (2.1)항에 따른 규정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형법 제 738 조나 제 739 조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이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하며,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구하는지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주민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수많은 정부 위원회와 보고서는 원주민(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누이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공공연한 인종 차별주의적 태도의 결과이든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관행의 결과이든 형사 사법 제도의 모든 부분에까지 뻗어 있음을 인정했다.

캐나다에서 자행된 식민주의, 강제 이주, 기숙 학교의 역사는 원주민의 상대적인 저학력, 저소득, 높은 실업률, 높은 약물 사용률과 자살률, 높은 수감률로 이어졌다.¹

원주민 피해율도 특히 원주민 여성과 소녀의 경우는 비원주민 여성과 소녀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²

캐나다 원주민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의 혐의 평가에서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식민주의 잔재의 결과가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원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고유의 제도적 배경 요인과 더불어 원주민의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1 *R v Ipeelee*, 2012 SCC 13

2 *Victimization of Aboriginal People in Canada, 2014*, Statistics Canada, 2016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³

원주민이 캐나다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고유하며, 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법적으로 정보에 입각한 정책, 관행, 절차가 필요하다.

원주민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검사는 그 원주민이 차지하는 고유의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원주민에게, 특히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게 일어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불공정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⁴ 검사는 원주민 여성이나 소녀가 피해자인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은 공익성이 강하여 기소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ALT 1 에 따라 기소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전통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친밀한 파트너 학대 사건의 경우, **형법 제 718.201 조** 역시 법원이 선고 시 여성 피해자의 취약성이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게 하고 있으며, 원주민 여성 피해자의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원주민이자 여성임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취약한 사람이 학대를 당한 사건에서 **형법 제 718.04 조**는 법원이 해당 범죄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저지라는 목적을 일차적으로 반드시 숙고하게 하고 있음(**VUL 1**)을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3 *Ewert v Canada*, 2018 SCC 30 at paras 57 and 58;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s 198-200

4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 198

부록 A:

BC 교정국의 존중하는 관계 프로그램

BC 교정국은 법원이 참석을 명령한 중간 위험도 및 고위험도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범과 그 외 사람들(예: 제810조 및 제 810.03 조 피고)에게 *존중하는 관계 프로그램(Respectful Relationships Program)*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연속 과정으로 구성된다. BC 교정국 직원이 진행하는 10주 프로그램인 *존중하는 관계(Respectful Relationships)(1부)* 및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11주 프로그램인 *관계(Relationships)(2부)*이다.

이 둘을 합친 *존중하는 관계(Respectful Relationships)*의 총 기간은 21주(약 5개월)이다. 프로그램 일정을 잡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두 프로그램을 확실히 마치게 하려면 거주지에서 최소한 1년간 여유를 주고 감독하는 방법이 권장된다.